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11. 1 선고 2020가단2574(본소), 2021가단1063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김민경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강상용, 고혜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해용

변론 종결2021. 8. 17.

판결 선고2021. 11. 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882,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5.부터 2021.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8,169,9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1,134,240원 및 위 돈 중 3,924,24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위 돈 중 17,21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2. 피고와의 사이에 강원도 고성군 C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하도급공사명: 철근콘크리트공사

4. 공사기간: 착공 2019. 5. 1., 준공 2019. 11. 30.

5. 계약금액: 일금 일십구억삼백만 원 정(₩1,903,000,000)

공급가액: 일금 일십팔억구천육백일십일만육천삼백오십칠 원 정(₩1,896,116,357)

(노무비: 일금 일억육천팔백오십팔만이천일백오십 원 정)(₩1,168,582,15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일금 육백팔십팔만삼천육백사십삼 원 정(₩6,883,643)

6. 대금의 지급

가. 선금금

(1) 없음

나. 기성부분금

(1) 기성지급시기: 매 1개월 30일 마감 익월 말일 지급(단, 신탁기성 입금 후)

(2) 지급방법: 현금 100%

<공사계약 특수조건>

1. 이 특수조건의 목적은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서 및 공사하도급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 특수조건과 현장설명서는 공사하도급계약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대금지불시기: 매 1개월 30일 마감 익월 말일 지급(단, 신탁기성 입금을 전제함)

7. 공사기간: 2019. 5. 2.~2019. 10. 30.

8.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당사 일괄 가입

19. 기성 신청시 노무비 명세서를 작성 후 원고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기성고 지급이 이월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9. 6. 28.부터 2020. 2. 3.까지 원고로부터 8회에 걸쳐 노무비 합계

1,380,685,381원을 지급받았고, 2020.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D용역에 2020년 1월분 노무비 3,924,240원, 2020년 2월분 노무비 17,21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로부터는 위 노무비 합계 21,134,240원(= 3,924,240원 + 17,2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20. 9. 21. 원고에게 '2020년 1, 2월분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추가 금액 169,466,609원이 발생하였으니 추석 전에 집행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0. 7. 피고에게 '초과지급 된 115,129,88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20. 10. 30.까지 반환하라'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20. 10. 13. 원고에게 '추가공사 부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55,655,28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20. 10. 28. 원고에게 '추가공사금액 73,293,602원이 발생하였고 보험료 등과 근로소득세공제액 합계 100,163,310원을 공제하더라도 기성금액 1,866,288,807원보다 9,841,485원을 초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노무비에 관하여 보험료 및 세금 82,023,63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1,380,685,381원을 실제 지급하였으며,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대금으로 528,460,926원을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 합계 1,991,169,937원(= 82,023,630원 + 1,380,685,381원 + 528,460,926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88,169,937원(= 1,991,169,937원 - 1,9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서 보험료 등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공사원가계산서로서 보험료 등에 관하여 실비정산을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1,903,000,000원과 실비정산을 전제로 한 위 보험료 등의 비용 합계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보험료 등 비용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액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서에 계약금액이 1,90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원가계산서에 도급액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과 동일한 1,90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공사원가계산서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직접노무비나 국민건강보험료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실비정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공사원가계산서의 구성항목 중 '간접노무비', '환경보전비' 항목도 마찬가지로 일정 항목의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1,903,000,000원은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된 항목만의 합계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4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서 보험료 등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비용이 공사금액에 포함된다는 전제에 서 있는 점, 위 각 보험료 항목의 금액이 '실비정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지출될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원고와 피고가 공사원가계산서를 통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산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구체적인 금액이 산정되지 않은 항목을 배제한 나머지 항목의 금액만 고려한 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1,903,000,000원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부 공사금액을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여 불합리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1,903,000,000원뿐만 아니라 실비정산을 통해 산출된 보험료 등 항목의 금액도 그 계약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다만 세금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성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별도의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가 원천징수를 통해 공제한 세금은 위 1,903,000,000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비로 1,380,685,381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528,460,926원을 관련업체에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고용한 인부들의 근로소득세로 16,085,430원, 주민세로 1,650,74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대금은 1,903,000,000원 및 실제 지출된 보험료 등 비용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1,926,882,477원(= 1,380,685,381원 + 528,460,926원 + 16,085,430원 + 1,650,740원) 및 보험료 등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지급된 공사대금 23,882,477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초과지급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20년 1월분 노무비 3,924,240원, 2020년 2월분 노무비 17,210,000원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각 노무비 합계 21,134,240원 및 그 중 3,924,24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3.

1.부터의, 그 중 17,21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4. 1.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2020년 1, 2월분 공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1,903,000,000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증액 합의가 없었고 이미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약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외에 별도로 2020년 1, 2월분 노무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20년 1, 2월분 노무비 합계 21,134,240원을 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1,903,000,000원 및 실제 지출된 보험료 등 비용이고,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대금을 23,882,477원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의 준공시기 이후 발생한 노무비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김영일